

핀테크 기업 동남아시아 진출 안내

삼일회계법인 동남아시아 투자자문 전문팀





Contents

- 01 동남아시아 핀테크 산업 현황
- 03 동남아시아 진출 주요 절차 및 공통 고려사항
- 09 각 국가별 고려사항
- 14 동남아시아 진출 단계별 자문 서비스
- 16 Contact Point

동남아시아 핀테크 산업 현황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로 정부, 은행 및 소비자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적용, 방향 전환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적용하여 금융 서비스 및 사용 방식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 또한 두드러졌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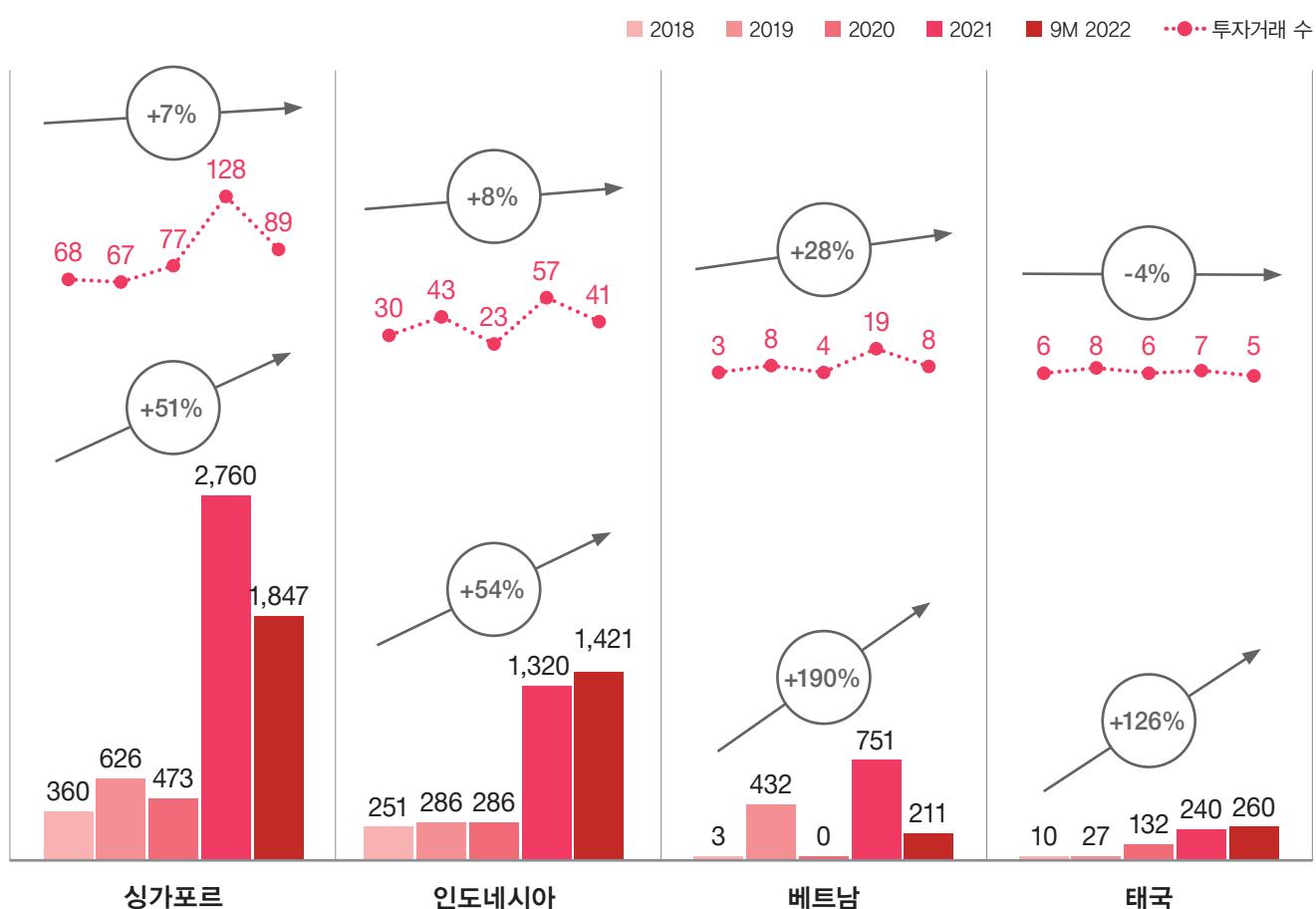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핀테크 기술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105억 달러였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3%가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6,98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추세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SEA)의 시장에서도 핀테크는 큰 성장과 함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OB, PwC, SFA가 공동으로 조사한 'Fin-Tech in ASEAN 2021'에 따르면 2021년 9개월 동안 35억 달러의 투자가 ASEAN 핀테크 시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0억 달러의 투자는 각각 1억 달러를 초과하는 13개의 대규모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별로는 여전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시장이 투자 규모 및 투자 수에서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절반 이상의 투자가 전자결제 분야에서 이루어져 아직까지는 전자결제가 여전히 핀테크 시장의 주요 부분임을 보여주었으며, 전자대출, 테크투자, 보험테크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ASEAN 4개 국가의 핀테크 투자 금액

단위: 거래 수, 백만 달러



출처: UOB, Mergermarket, Capital IQ, 온라인뉴스, PwC 연구 및 분석

2

동남아시아 진출 주요 절차 및 공통 고려사항





사전 검토 단계

■ 사전 검토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 해외사업에 대한 통제 정도와 해외투입자원 비중에 따른 투자방식 결정
 - 계약에 의한 방식, 직접 투자방식
- 일반적으로 진입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통제력이 적은 진입방식을 택하여 진출을 시도하며, 점진적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진입방식 선호
- 해외시장 진입방식 결정은 기업 내부자원(경영자원 및 핵심역량, 국제화 경험 수준 등)과 외부 환경요인(해당 국가의 규정과 시장환경 등) 고려 필요

■ 국가별 투자 환경 분석

- 각 국의 거시경제, 투자 관련 행정 절차 및 법규정, 산업별 시장 규모 등 기본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후 국가별 투자 환경 분석을 통해 투자 대상 국가 선별
- 일반적 고려 사항

구분	고려 사항
국가 개요	인구, 면적, 기후, 언어, 정치 체계 등 일반 현황 분석
거시 경제 변수	GDP, 1인당 GDP, 물가상승률, 국가부채, 국가신용등급, 환율 등
경제 구조 및 특징	인프라 현황, 산업별 GDP, 수출 비중, 소비 행태, 외국인투자 현황 등
금융 및 자본 시장	금융 시장 및 자본 시장의 특징, 자본 조달 방법, 채권 발행 및 주식 시장 상장 요건, 주식 시장 현황, 외환거래 관련 규정 등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	법체계, 일반 투자 정책,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투자 인센티브, 외국 및 한국기업 투자 행태 및 사례, 부동산 관련 규정 등
행정 절차	법인 설립, 해산 및 청산 절차, 법인 운영 시 각종 compliance 규정, 유관 기관 현황, 공무원 부정부패 현황 등
회계 및 회계 감사 제도	회계기준, 감사기준, 회계의 투명성 등
조세 제도	조세법 체계,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산업별 주요 세무 이슈 및 동향, 조세 조약 체결 현황 등
노무 제도	노동 관련 법규, 최저임금제도, 해고보상금, 노동 문화, 인력 고용 방법, 노동인력 현황 등
기타	자연 재해의 발생가능성 등



■ 사업성 분석

- 투자 대상 국가에 대한 투자 환경 분석과 함께 사업타당성 분석 병행
- 사업성 분석 단계별 일반적 고려사항 요약

시장성 분석	시장 환경, 시장 구조(산업 분석, 고객 분석, 경쟁 분석), 시장 규모
수익성 분석	매출 및 원가구조, 판매관리비, CAPEX, 운전자본, 차입금 및 금융비용
타당성 종합	자금조달, 성장성, 민감도 분석 등

■ 투자 실행 계획

- 투자 환경 및 사업타당성 분석이 완료되면 기업의 내부 역량과 현지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진입 방식을 결정
- 최근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경험을 확보하여 현지법인이나 JV의 설립, 현지 회사 인수 등 직접 투자 형태를 선호
- 직접투자의 경우 해외시장에 대한 통제력은 높으나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투자 실행 계획의 작성이 필요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도를 제외하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투자 실행에 예상치 못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보다 더 중요



투자 실행 단계

■ 투자구조 검토

- 직접 현지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직접투자 방안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간경유지국을 경유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안이 있음
- 통상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는 투자 단계가 적은 직접투자 방안이 세금 유출이 적어 유리
- 그러나, 해외투자구조 검토 시에는 세 부담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외환규제, 조세조약, 투자실행 및 경영관리의 용이성, 위험의 본사 전이 가능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금조달 및 철수전략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
- 매우 다양한 투자구조 대안들이 존재하는 만큼 사전에 향후 운영 및 철수 전략과의 연계성 고려 필요

■ 법인 설립

- 국가별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 현지 법인명 결정, (2) 투자 관할 부서 승인 신청, (3) 정관 공증, (4) 세적 등록 및 사업자 등록, (5)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6) 기업감독 부서 등록, (7) 각종 라이선스 및 인허가, (8) 비자 프로세스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됨
- 통상 법인 설립은 짧게 1개월, 길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특성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행정절차가 불투명함에 따라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해외투자 신고

-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현지 절차 이외에 한국 내 절차로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투자 신고 필요

■ 초기 사업 운영 준비

- 법인 설립 및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인력 채용, 세무신고와 같은 각종 compliance 준수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필요
- 국가별로 수행해야 하는 compliance가 다르고, 회사의 각 영역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른 만큼 영업, 재무, 회계, 세무, 자금, 인사, 총무, 법무, 환경, IT 등 기능별로 사업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관행에 능통한 우수한 현지 인력이나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초기 운영을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됨



운영 단계

■ Compliance Check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법률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명확한 관련 규정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법 규정과 실무 적용간에 괴리가있는 경우도 많아 compliance 준수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움
- 각 분야별 연간 compliance 일정을 정리하여 담당자를 지정한 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현지법인의 compliance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필요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조세 이슈 중 하나임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000년대 후반 들어 이전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어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중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전가격은 과세관청에서 정책적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과세가 될 경우 추징 금액이 매우 크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분쟁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됨
- 이전가격 과세 역사가 짧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논리 없이 조사관 재량에 따라 과세되는 사례가 많으나, 이전가격 조사에 따른 세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 정비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 국세청과의 APA/MAP 신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투자 단계에서부터 현지 법인의 거래구조와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필요하며, 각 국의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이전가격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

■ 현지 법인 결산 및 보고 체계

- 경영, 조직 및 노사 문화 등의 차이, 열악한 IT 인프라 환경 등에 기인하여 결산 및 보고 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기업 중 상당 수는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K-IFRS 적용 및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분·반기 보고서는 45일 이내)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현지법인의 결산 및 보고가 더욱 중요
- 결산 및 보고 지연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에 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단, 일방적인 주입방식 보다는 국가의 사회적 배경에 맞게 기업 문화를 변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현지 직원들의 반발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



철수 단계

■ 투자 철수 단계

- 철수(Exit)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매각, 청산, 휴면 등 각 철수 전략에 따른 조세 등 법률 효과와 시장의 평판 등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철수 전략 수립 필요
- 전략 수립 후 현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과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향후 재투자 시의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고 노무 이슈를 최소화해야 함
- 이와 더불어 현지 문화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사 및 주변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단순히 철수 시점에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서부터 운영 단계를 거쳐 철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철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중요

3

각 국가별 고려사항



싱가포르



법인 설립

-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진출이 일반적. 이외에도 본격적인 진출 이전 단계인 경우 지사 Branch Office 혹은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설립도 가능하나 일부 활동에 제약사항이 있음
- Private Company의 경우 최소한 1인의 현지 이사 Local Director가 있어야 하며, 최소 자본 S\$1로 설립 가능

외국인 투자

- 일반적인 FinTech 기업에 대한 법인 설립, 운영 및 투자 등에 관해 외국인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사업장 선정

- 초기 스타트업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운영하는 K-Startup Center Singapore Office를 통한 사업장 확보 가능. 이외에도 싱가포르 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혹은 한국 금융 기관이 운영하는 핀테크 프로그램(예: KB Global Fintech Lab)을 통해 사업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싱가포르 FinTech 기업들은 Central Business District^{CBD} 내 위치함

세무 및 세제 혜택

- 요건을 충족하는 신생법인에 최초 3년간 조세 감면 적용 혹은 요건을 충족하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 세제 혜택 이외에도 스타트업을 위한 비자 지원 제도 EntrePass, 공동투자 Startup SG Equity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존재함(싱가포르 거주자 지분 비율 등 지원 자격 요건 있음)

회계 및 회계감사

- Small Company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 Small Company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필요
 - 매출액 총액 S\$10m 이하
 - 자산 규모 총액 S\$50m 이하
 - 전체 직원 수 50명 이하

배당, 투자 회수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 이득 및 싱가포르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 따로 과세하지 않으며, 외환거래 및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음

FinTech 관련 법률 및 라이선스 현황

- Digital Payment Token 서비스를 포함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FinTech 회사의 경우, 2020년 1월 발효된 Payment Service Act를 통해 관련된 규제 및 요구되는 라이선스 확인 필요
- 싱가포르의 주요 금융감독기구인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내 금융기관 목록^{*}을 통해 금융산업 섹터별 필요한 라이선스 및 등록된 회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https://eservices.mas.gov.sg/fid/institution>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파트너십 FIRMA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주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함
- 투자자 형태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를 PMA Penamanan Modal Asing, 순수 내국인 회사를 PMDN Penamanan Modal Dalam Negeri, 상장 주식회사는 PT Tbk Perseroan Terbatas Terbuka로 구분
- 주식회사 PT 설립에 약 2~5개월이 소요되나, 별도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할 경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핀테크 대출 제공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는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의 권한 하에 있음
- 외국인 투자는 주식회사 PMA로 설립 요구.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는 경우, 현지 내국인 투자법인과 합작투자 JV/Joint Venture 형태로 투자/운영. 최근 옴니버스 법안 Omnibus Law 발효 이후에는 투자규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인 투자

- 현재 외국인 최대 지분율 한도는 80~85%이며, 외국인 투자제한규정은 매 2~3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핀테크 대출 관련 모든 거래는 루피아 통화만 사용해야 하며, 가상화폐 또는 외국환을 사용할 수 없음

세무 및 세제 혜택

- 법인세율: 22%
- Tax Allowance: 국세청 DGT은 투자청 BKPM장의 추천을 전제로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1) 투자자산을 6년간 양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투자 총액의 30% 상당액(6년간에 걸쳐 연 5%씩)을 순이익에서 차감 (2) 세무상 조기 감가상각 허용 (3) 결손금의 이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4)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10%로 경감과 같은 세금우대조치를 부여
- Tax Holiday: 다양한 산업과 관련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5~20년간 법인세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 후속하는 2년 동안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세 25% 또는 50%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음
- 기타 특정산업 세제혜택 Super Deduction Facility, 상장회사 조세감면, 벤처캐피탈 조세감면 등이 존재

회계 및 회계감사

- 인도네시아 회계위원회 IAI에서 정한 인도네시아회계기준 PSAK 적용(국제회계기준 기반)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의무

배당, 투자 회수

- 배당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각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준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는 20% 원천세율 적용(거주자는 면제 또는 10% 원천세 적용)
- 인도네시아에서 통상 법인을 청산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실무상 약 2년)되며, 소멸 시효가 남아있는 모든 기간에 대한 세무 조사가 수반됨



베트남

법인 설립

-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 Limited-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y의 형태로 진출하며, 진출단계 또는 업종에 따라서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법정최소자본금은 없으나,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 규정을 두기도 함

외국인 투자

- 디지털 은행: 디지털 은행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아직 없으나, 모든 디지털 은행은 일반 은행의 지원하에 있어야 하며, 베트남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음(외국인 소유한도는 정관 자본금의 최대 30%까지 허용)
- 디지털 대출: P2P 대출에 대한 특정 법적 프레임워크는 없으나, 은행 및 금융 회사의 지원을 받는 디지털 대출은 베트남중앙은행의 감독 대상이며 다양한 제한이 적용됨
- 기타 핀테크 분야: 외국인 소유지분에 한도가 없음

세무 및 세제 혜택

-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20%이며, 세제 혜택은 법으로 정해진 투자장려활동, 투자장려지역 및 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특정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됨
- 조건에 따라서 15년간 우대세율 10% 또는 10년간 17%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프로젝트 기간 전체에 걸쳐 15%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음. 우대세율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법인세 면제와 감면 혜택도 주어질 수 있는데, 법인세 면제 및 감면기간의 경우 4년 면제 이후 5~9년간 50% 감면 또는 2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음

회계 및 회계감사

- 국제회계기준에 기반한 베트남회계기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 사용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차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받은 연차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완성되어야 하고, 라이선스 당국, 재무부, 지역세무서, 통계청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
-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5년 연속 감사 수행 후 '회계법인' 교체 필요

배당, 투자 회수

- 투자자에게 배당 시 별도의 배당세는 부과되지 않음
- 청산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최종 세무조사가 요구됨

FinTech 관련 법률 및 라이선스 현황

- 핀테크 활동을 규정하는 통합 체계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2022년 4월 베트남중앙은행에서 핀테크 기업이 규제 환경에서 다음의 상품을 개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2차 시행령 초안 발표 – (1) 기술 플랫폼의 신용 거래 확대 (2) 신용등급 평가 (3) API 개방 (4) P2P 대출 (5) 기술 기반 솔루션(예: 블록체인, DLT 등) (6) 기타 은행 지원 서비스



태국

법인 설립

- 태국에 외국기업^{Foreign entity}을 설립(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라 외국사업허가 신청^{Foreign Business License application} 필요)하거나, 현지 상대방과의 파트너십 또는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통해 태국 펀테크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형태로 개인기업, 유한회사, 파트너십, 합작투자^{J/V} 국외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등이 있으며, 외국 투자자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임

외국인 투자

- 일반적으로 태국의 유한회사는 외국인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 구체적인 펀테크 사업 및 라이선스에 따라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예: P2P 대출 플랫폼, 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25% 한도 – 태국 은행 또는 재무부에서 동 한도 초과에 대한 특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외국기업(외국인 지분 50% 초과)은 상업등록국^{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에서 발급하는 외국사업허가^{FBL} 또는 투자청^{BOI}의 특정 법규에 따른 면제를 획득한 후에만 운영될 수 있음

사업장 선정

-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외국 기업은 투자청^{BOI}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업무사용 목적으로 태국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음

세무 및 세제 혜택

- 일반적으로 법인세율 20% 적용. 펀테크 디지털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투자청^{BOI}의 특혜 제도를 기반으로 특정한 법인세 감면 기회(예: 기본 인센티브에 따른 8년의 법인세 면제)가 존재

회계 및 회계감사

- 외국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상무부 및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태국의 민간 기업들은 비공개 기업에 대한 태국재무보고기준^{Thai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Non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 TFRS for NPAE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재무제표는 독립적이고 공인된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함

배당, 투자 회수

-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한 배당금은 주식 금액에 비례하여 모든 주주에게 선언 및 할당될 수 있음. 또한 등록 자본금의 10%에 도달할 때까지 이익의 최소 5% 이상의 법정적립금(각 배당 분배 시) 적립 의무가 있음.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10%의 원천징수 적용(단, 투자청^{BOI}에서 과세 면제 부여 시 제외)

동남아시아 진출 단계별 자문 서비스



사전검토 – 투자위험 평가 및 대응 방안의 검토

- 시장조사
- 사업타당성
- 진출 방식별 구조 및 세제 혜택 검토
- 투자 환경 및 입지 분석
- 투자에 따른 환경 및 법 규정의 검토

투자실행

- 매수자문
- 투자 사업성 검토
- 투자 인센티브 검토 및 정부와 협상 시 지원 서비스
- 사업부지 선정 및 협상 관련 지원 서비스
- 효율적 투자구조 검토
- 법인설립 관련 지원 서비스
- 초기 운영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사업운영

- 회계감사
- 세무신고 및 Tax Planning 자문
- 세무조사 대응
- 현지법인 진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프로세스 개선 자문

투자 회수 및 사업 철수

- 지분 또는 자산 매각 자문
- 현지법인 폐쇄



Contact Point

삼일회계법인

정민우 파트너

02-3781-9816

min-woo.jung@pwc.com

전용욱 파트너

02-709-7982

yong-wook.jun@pwc.com

정기욱 회계사

싱가포르

02-709-8873

ki-wook.jung@pwc.com

이무열 회계사

베트남, 태국

02-709-0475

mooyeol.lee@pwc.com

PwC 인도네시아

정태훈 파트너

인도네시아

+62-21-5099-2901

taehun.jung@pwc.com

PwC 베트남

손한희 회계사

베트남

+84-28-3823-0796 (ext.) 4611

son.hanhee@pwc.com

www.samil.com

S/N: 2303A-BR-016

© 2023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